



제 319 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 1 차 도시교통위원회

2026년 남양주시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실태조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2026. 4. .

도시교통위원회
전 문 위 원

2026년 남양주시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실태조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1. 제안경과

- 본 동의안은 2026년 4월 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도시교통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추진근거
 - 「도로교통법」 제12조의4(보호구역에 대한 실태조사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보호구역에 대한 실태조사 업무의 위탁)
 -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의회동의 및 보고)
 - 「남양주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4조(업무제휴·협약의 체결방법)
- 추진 필요성
 - 법률에 따른 수탁 대상기관인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업무 위탁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보호구역 관리에 반영하고자 함.

3. 위탁사무 내용

- 2026년 남양주시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실태조사
 - 교통사고 및 교통안전시설 현황조사, 통행량 및 통학 동선 조사, 시설규정 준수여부 검토, 문제진단 및 개선안 검토, 도면 작성 등

4. 위탁시설 개요

- 관내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114개소 (통합·중복 제외)

구분	합계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
개소수[개]	114	104	7	3
총연장[m]	62,245	60,250	1,635	360
평균연장[m/개]	546	579	233	120

5. 민간위탁 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2026. 12. 31.까지

6. 수탁기관 선정방식

- 수탁기관 : 한국도로교통공단 (경찰청 산하 공공기관)
- 수탁방법 : 업무 위수탁 협약 체결

*** 관련법률에 지정된 전문기관으로, 수탁기관 선정 심의 생략**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경우 제외

7.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

- 소요비용 : 약 280백만원 (도비 50%, 시비 50%)
 - 2026. 3. 17. 도비 보조금 최종 확정 및 교부 결정 통보(경기도)
- 산출근거 : 총연장 62km × 4.5백만원/1km = 약 280백만원
 - * 행정안전부 및 경찰청 배포 2026년 원가산출 내역서 기준

8.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구 분	검 토 의 건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자체 담당 공무원의 직접조사 또는 일반 용역계약을 통한 조사가 가능하지만 현장조사, 도면 작성, 개선안 수립, 통합관리시스템 자료 입력 및 관리 등 업무 범위가 과다하여 담당 공무원의 직접 수행은 어렵고,○ 일반용역사보다는 관련지침을 수립·관리하는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양질의 결과 도출 필요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로교통법」에 따른 경찰청 산하 공공기관으로 과업 수행의 공공성 및 안정성 확보
경제적 효율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탁비용은 관련지침에 따른 과업범위에 적합하게 수립된 경찰청 표준원가계산에 근거하고,○ 2024년부터 실태조사를 수행했던 기관으로 업무의 연속성 확보에 따른 안정적 결과물 도출 및 효율성 증가 기대
민간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로교통법」을 관할하는 경찰청 산하기관으로써 교통

구 분	검 토 의 견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안전분야에 축적된 경험 및 관련 전문인력 활용 가능
성과 측정의 용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 범위 및 방법 등 관련지침을 수립하는 공공기관에서 직접 수행함에 따라 내실있는 성과 도출이 가능하고, ○ 정부합동평가 및 시군종합평가 연계지표로 조사 결과에 대해 행정안전부 및 경기도에서 최종 평가 수행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2조(지도·점검)에 따라 위탁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이 가능하고, ○ 「도로교통법」에 따른 경찰청 산하 공공기관으로 과업 수행의 투명성 확보 기대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4년부터 우리 시 실태조사를 지속 수행한 기관이자, 실태조사 지침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 일반용역사나 타 교통전문기관 보다 양질의 결과 도출 가능
총 합 의 견	'24년 법령 개정에 따라 시행된 초기단계로, 일반용역사나 타 기관의 수행 경험이 부족함에 따라, 관련지침을 수립한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공신력 있고 안정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됨

9. 향후 계획

- 2026. 5. : 업무 위수탁 협약 체결 (시, 한국도로교통공단)
 - 한국도로교통공단 협약안 협의 및 변호사 자문결과 반영

10.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도로교통법」 제12조의 4에 따라 어린이와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현황 등 교통환경에 대한 실태조사 업무를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항에서 규정한 기관 중에 하나인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위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 위탁 업무는 관내 보호구역 114개소 총 연장 62,245미터에 대하여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들을 도면화하여 정보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주된 사업으로 하며, 이는 우리 시 보호구역에 대한 안전하고 체계적인 관리와 개선사업의 필요성을 파악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을 줄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교통안전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한국도로교통공단’이 본 과업을 수행하는데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법령에 따라 매년 연례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는 사무의 경우는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3항 2호에 따라 의회 동의 예외 사항에 해당되기에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도로교통법

제12조의4(보호구역에 대한 실태조사 등)

- ① 시장등은 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과 제12조의2에 따른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현황 등 교통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및 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 ③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도로교통공단법」에 따른 한국도로교통공단(이하 "한국도로교통공단"이라 한다) 또는 교통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1.30 제20167호(한국도로교통공단법)]
[[시행일 2024.7.31.]] [본조신설 2023.4.18] [[시행일 2024.1.1]]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조의2(보호구역에 대한 실태조사 업무의 위탁)

- ① 시장등은 법 제12조의4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법 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이하 "어린이보호구역"이라 한다) 및 법 제12조의2에 따른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하 "노인·장애인보호구역"이라 한다)에 대한 실태조사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7.23 제34731호(한국도로교통공단법 시행령)] [[시행일 2024.7.31]]
 1. 「한국도로교통공단법」에 따른 한국도로교통공단(이하 "한국도로교통공단"이라 한다)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교통 관련 기관
 3. 「지방공기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기업 중 교통 관련 기관
 4.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중 교통 관련 기관
 5. 정관이나 규약 등에 교통안전에 관한 업무를 사업 내용으로 정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업무의 일부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12.19 총전의 제8조의2는 제8조의3으로 이동] [[시행일 2024.1.1]]

□ 남양주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4조(업무제휴·협약의 체결방법) 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업무제휴·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대상기관의 적정성과 업무수행능력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업무제휴·협약을 체결한 후 남양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업무제휴·협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해 개별법령에서 정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2. 1. 13.>

1. 시의 예산부담을 직접 명시하는 경우
2. 시의 권리 포기를 포함하는 경우
3. 법률의 위임에 따라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4. 「지방자치법」제47조제1항제8호에 해당되는 사항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게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여 업무제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6조 (의회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남양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경기도로부터 위임받은 사무에 대하여는 그 위임기관의 장 또는 도지사의 승인으로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받은 위탁사무와 관련하여 위탁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위탁기간의 변경
2. 기존 위탁사무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3. 그 밖에 재동의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위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2.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3. 정부공모사업 참여 등으로 수탁기관이 미리 지정되어 있는 경우